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160
----------	------

2024년 12월 18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0월 15일, 이영실 의원 외 17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0월 18일
다. 상정일자: 제327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6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4년 12월 18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이영실 의원)

- 가. 제안이유
- 서울에너지공사가 인사, 재무 등 공사 경영의 근본이 되는 정관의 주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의 인가를 받게 되어있는 현행 규정에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공사 운영의 투명성 및 내실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기 전에 시의회 소관 상임 위원회에 보고토록 함(안 제6조제2항 후단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기업법」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신·구조문 대비표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박귀수)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에너지공사가 정관을 변경할 경우 시장의 인가를 받기 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공기업의 설립 목적, 명칭, 소재지, 사업, 임직원, 이사회, 재무회계, 자본금, 사채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제56조 제1항 및 제3항¹⁾).
- 안 제6조제2항은 정관변경에 있어 시장의 인가 전에 소관 상임위원회 사전 보고 절차를 추가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으로, 공사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의회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 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또한, 서울시 산하 21개(공사·공단 5개, 출자·출연 16개) 기관 중 20개 기관에서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관련 조례에 명시하고 있는바, 동 조례에도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법적 일관성을 갖출 필요성이 있을 것임[참고자료 참조].
- 다만, 서울에너지공사는 「지방공기업법」상 독립된 법인격²⁾을 가진 법인인바, 정관변경 사전 보고가 공사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히 운영되어야 할 것임.

1) 「지방공기업법」 제56조(정관) ③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지방공기업법」 제51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원인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정관) ① (생 략)</p> <p>②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후단 신설></p>	<p>제6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p>